

정보보호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2007년 9월 1일 시행
 2009년 3월 1일 개정
 2009년 9월 1일 일부 개정
 2010년 5월 1일 일부 개정
 2014년 3월 1일 개정
 2014년 9월 1일 일부 개정
 2015년 3월 1일 개정
 2016년 9월 1일 개정
 2018년 2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일부 개정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본교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및 대학원학칙 정보보호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 내에서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교과목 및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② 학기별 학점 취득은 다음과 같다.

하한 취득학점	상한 취득학점	초과 취득학점	연구지도학점
석사 2학기 동안 3학점	12학점	3학점	2학점
박사 3학기 동안 3학점			(매 학기 신청)

제 3 조 (이수과목 지정 및 면제) ① 신입생은 입학 후 20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선수과목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별로 선수과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 조 (기초공통과목 면제)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공통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제 5 조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외부 공인기관이 시행한 영어 시험으로 하며, 성적표(또는 증명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접수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정별 외국어시험 합격 점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의 정책변경시 기관이 인정하는 동일 수준의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석사과정/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TOIEC	710점
TOEFL	CBT 205점, IBT 75점, PBT 540점 (2019년 개정토플 응시자는 토플본부 환산표에 의해 가늠한다.)
TEPS	600점 (뉴TEPS 327점)

③ 성적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접수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을 인정한

다.

④ 수료생 또는 5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9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국제어학원에서 시행하는 대학원외국어시험대체강좌를 수강하고 B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정보보호학과를 제외한 계약학과는 2학기부터 대학원 외국어시험대체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은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한국어강좌(2급 이상 과정)”에서 B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⑥ 계약학과의 외국어시험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6 조 (종합시험)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교과목 중에서 3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교과목 중에서 3과목, [별표]의 전공과목 중에서 2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③ 각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학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되 그 내용을 반드시 학과내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학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 학과내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 7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각 학과 및 전공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보호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생

가.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서 해당 전공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국내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 승인을 획득한 경우

나. 지도교수가 승인한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제학술지에 투고가 완료된 후 해당 전공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정보보호학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해외유수학술지 2편 이상(정책전공은 1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고, 국제저명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해외유수학술지로 본다. 다만, 해당 분야의 상위 10% 이내 SCI급 저널 1편은 해외유수학술지 2편으로 간주한다.

3.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초에 시행하는 학위청구논문 사전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8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전기는 4월 말일, 후기는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① 각 과정별 심사용 논문(가제본된 것)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 3부

2. 박사 5부

② 논문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

2.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3.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4.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주소록(해당자)

③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료는 따로 정한다.

제 10 조 (심사용논문의 분량) 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 11 조 (심사용논문의 용지 및 판형) 용지는 백지를 사용하고, 크기는 4·6배판(대략 257×188mm)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심사용논문의 개요 및 번역본 제출) ① 논문개요는 2000자 내·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국문으로 된 경우에는 논문개요를 외국어로 작성하고,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국문개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보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 14 조 (논문심사 위원)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내부교수 3인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원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갖는다.

⑤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 15 조 (박사학위 논문심사 회수)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최소한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조 (재심사)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 (완제본논문의 언어)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이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완제본 논문의 온라인 등록) 완제본 논문을 제본하여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제 19 조 (완제본논문의 제본 및 제출) ①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면 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제본하여 소정기일 내에 지정된 부서에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

② 완제본논문 원본은 심사위원(장)의 견인을 받아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제본하여 본인이 보관한다.

③ 석사학위 논문 중 3부는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나머지는 백색 또는 회색의 부드러운 표지로 한다

④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금박 인쇄로 한다.

제 20 조 (완제본논문의 판형 및 지질) 완제본논문의 규격은 4·6배판으로 하며, 지질은 모조지 80파운드로 한다.

제 21 조 (완제본논문의 장정 및 양식 차례) 완제본논문의 표지, 내지 등의 장정(裝幀), 작성 양식, 차례 등은 일반대학원 논문양식을 따른다.

제 22 조 (완제본논문 활자) ① 논문제목의 활자의 크기는 활자수가 10자 이내일 경우에는 30포인트(pt.), 1행 이내일 경우에는 28포인트, 2행 이상일 경우에는 21포인트로 한다.

② 학교명칭(高麗大學校 情報保護大學院. School of Cybersecurity, Korea Univ.)의 활자는 논문제목의 활자 크기가 28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20포인트, 21포인트의 경우에는 18포인트 크기로 한다

③ 년 월 일과 인(印)은 14포인트로 한다

④ 기타 부분은 전부 16포인트로 한다(학과, 성명, 지도교수, 석사학위논문, ……제출함, ……완료 함 등).

⑤ 활자의 위치는 표시된 대로 하되 위치표시가 없는 것은 좌우 중앙에 놓이게 한다.

제 23 조 (계약학과 석사과정 트랙별 학위청구) ① 정보보호대학원 계약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논문트랙’과 ‘교과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트랙 구분 없이 학사운영 내규 제 3조와 6조의 학위청구 자격시험은 반드시 합격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 석사과정 학위청구 트랙의 신청은 재학학기 3학기부터 학기초 지정된 기간에 신청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트랙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트랙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논문트랙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논문트랙’을 신청한 자는 학점요건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갖추고 논문사전

심사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교과트랙’을 신청한 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에 추가로 전공 6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 학기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⑤ 계약학과 운영협약에 의해 교과트랙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4 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제6조(외국어시험) 제5항은 2009학년도 후기 외국인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제6조 제4항의 금융보안학과는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필수 이수과목) 1항의 사이버보안학과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3조, 제7조, 제8조 개정)

부 칙

1.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종합시험 전공과목

구분	전공대상과목	비 고
정책분야	정보보호법제 사이버국제법 위험관리 전자금융보안론	4과목 중 2과목을 택하여 시험응시
기술분야	암호알고리즘1 네트워크보안 위험 관리 디지털포렌식기술(디지털포렌식개론)	16학년도까지 적용
정책분야	정보보호법제 사이버안보정책 위험관리 전자금융보안론	4과목 중 2과목을 택하여 시험응시
기술분야	암호알고리즘1 네트워크보안 위험 관리 디지털포렌식개론	17학년도부터 적용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조, 제 12조, 제 17조, 제 22조 개정)

(계약학과 기 수료자의 교과트랙 학위청구) ① 계약학과 기 수료자는 석사과정생으로 2020년 2월 수료자까지 한정한다.

② 기 수료자로서 교과트랙으로 학위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교과트랙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학 상태로 전환하여야 하며 제 23조에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단, 학점 추가 취득 학기동안 재학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학은 할 수 없다.